

의안번호	제 51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10월 일 (제 295 회)

**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0년 10월 5일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0. 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 및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 개정(2010. 6. 29.)에 따라
각급학교 정비구역안의 학습환경조사 및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
출입·검사·수거, 행정처분 요청,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을 고등학
교 업무는 본청이, 중학교 이하 학교 업무는 지역교육청이 각각 담당
하도록 정하였던 것을 관리·감독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
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각급학교 정비구역안의 학습환경조사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
자 함(안 제5조제28호 신설)
- 나. 각급학교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·검사·수거, 행정처분 요
청,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함(안 제5조제29
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이의 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- (2) 입법예고 : 2010. 7. 30. ~ 2010. 8. 19.
 - (3) 규제심사 : 심사결과 규제사무 없음
 - (4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28호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8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·각종학교의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조사
29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·각종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·검사·수거 등과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·징수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학습환경조사와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·검사·수거 등과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27. 생략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27. (현행과 같음)</p> <p>28. <u>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 · 특수학교 · 각종학교의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조사</u></p> <p>29. <u>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 · 특수학교 · 각종학교의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 · 검사 · 수거 등과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 · 징수</u>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10046호)

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□ 학교보건법(법률 제9770호)

제6조의3(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) ① 교육감은 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)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·위생,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,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교의 보건·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의에 따라야 하며,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제2항에 따른 건의방법·절차, 제3항에 따른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14]

□ 학교보건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2232호, 2010. 6.29, 일부개정)

제20조(학습환경조사 등)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

정화구역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건·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·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·진동, 비산먼지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,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,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(校舎)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학교의 휴교·이전 또는 임시이전을 결정하면 그 학교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은 조사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, 방법 및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권한의 위임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화구역 설정권한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

② 교육감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29>

□ 학교급식법(법률 제10070호)

제19조(출입·검사·수거 등)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·시설·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·검사·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,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제20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

위임할 수 있다.

제21조(행정처분 등의 요청)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「식품위생법」·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·「축산법」·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·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·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0.5.25>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조치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25조(과태료) ①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②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08.2.29>

□ 학교급식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2233호, 2010. 6.29, 일부개정)

제17조(권한의 위임)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,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29>